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옥 외 광 고 물 등 의 관 리 와
 옥 외 광 고 산 업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처분기준을 현실화하고, 옥외광고수익금의 회계 처리방법을 개선하며, 전자게시대를 활용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동광고물 과태료 처분 강화 및 감정기준 마련(안 별표 8)

- 1)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가중처분을 시장등의 재량행위에서 의무행위로 변경하고, 4단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광고물의 면적 기준을 2단계로 단순화 하며, 입간판 및 현수막에 대한 최소 과태료를 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함
- 2) 위반 행위자가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미성년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해소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옥외광고수익금 국제행사 현행화 및 처리 방법 개선(안 제31조, 별표 2)

- 1) 202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취소로 지원 근거 삭제
- 2) 자치단체에서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로부터 옥외광고물법 제11조의4제4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비용을 지원받은 기관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하도록 하며,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배분 또는 반납받은 수익금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익금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 규정함

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홍보구역 확대(안 제16조)

- 시장등이 설치하는 전자게시대의 경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만 홍보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전통시장 홍보가 가능하도록 허용

라. 기타 입법 미비사항 정비(안 제4조, 제17조)

- 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벽보와 현수막은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 2)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광고가 허용되는 도로명주소시설을 옥외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벽보와 현수막은 제외한다.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소상공인·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호다목 중 “지정게시대”를 “지정게시대·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3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용하고 남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처리방법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별표 2의 제목 중 “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등”을 “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잔여금 처리방법 등”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배분할 것”을 각각 “배분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조정할 것”을 “조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할 것”을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나목1)”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목1) 및 다목”으로, “통보할 것”을 “통보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방법

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산정할 때에는 광고물 설치비, 유지관리비, 영업비 등 광고물 설치·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제4호라목에 따라 전년도에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서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한 금액은 당해 연도 옥외광고 수익금에 반영한다.

4.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후 남은 금액 처리방법

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는 제3호가목2)에 “356;”라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을 법 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입해야 한다.

나. 제3호가목3) 및 제3호나목2)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터를 통해 사업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은 기관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해당 사업이 종료 또는 취소된 날의 다음 분기까지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해야 한다.

다.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제3호가목3), 제3호나목2), 제4호나목에 따라 배분 또는 반납된 수익금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법 제11조의 4제4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제1호 주요 국제행사의 해당 조직위는 제3호나목1) 및 제3호다목에 따라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을 국제행사가 종료 또는 취소된 날의 다음 분기까지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반납된 금액을 다음 연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반영해야 한다.

별표 8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나.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다.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라.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마.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 및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중과한다.

바. 제1호·제4호·제5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

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호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표를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를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2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 ·벽보·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 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연면적 3㎡ 이하 2) 연면적 3㎡ 초과 나. 현수막 1) 면적 10㎡ 이하	법 제20조제1 항제1호 및 제1 호의2	개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개당 80만원+ 연면적 3㎡ 초과 하는 면적의 0. 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개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개당 105만원+ 연면적 3㎡ 초과 하는 면적의 0. 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개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개당 135만원+ 연면적 3㎡ 초과 하는 면적의 0. 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2) 면적 10m ² 초과		장당 80만원+ 면적 10m ² 를 초 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105만원+ 면적 10m ² 를 초 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만원 이상6 만원 이하	장당 135만원+ 면적 10m ² 를 초 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만3천원 이 상 8만원 이하
다. 벽보				
라.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6천원 이상6 만원 이하	장당 8천원 이상8 만원 이하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은 경우	법 제20조제 1항제1호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 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초과 10 만원 이하		
나. 가입하지 않은 기 간이 30일 초과 90 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다. 가입하지 않은 기 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 00만원 이하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 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80 만원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 만		80만원 이상 15 0만원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 00만원 미만		
라.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5 00만원 이하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	법 제20조제1	20만원 이상 10	100만원 이상 2	250만원 이상 5

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항제5호	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00만원 이하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 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 항	10만원 이상 30 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 만원 미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 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단서 신설> 8. ~ 13. (생략) ② (생략)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u>관할구역</u>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 시설) ①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u>한</u> <u>다</u>). <u>다만, 제17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벽보와 현수막은 제외한다.</u> 8.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u>소상공인</u>

<u>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u>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라목의 공공시설물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가.·나. (생략) 다.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u>지정게시대</u> 라.·마. (생략) 2. ~ 5. (생략)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u>·전통시장</u>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 -----. 1.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 <u>지정게시대·도로명주소시설</u> 라.·마.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541